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0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신동욱・박준태・박정하

진종오 • 우재준 • 김소희

김도읍 • 박상웅 • 백종헌

안상훈 • 유상범 • 김은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유산 중에서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여 문화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존·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임(안 제6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1조의3(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 ① 국가유산 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 산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 등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적절한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방법, 자료제출 요구, 사전 동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 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61조의3(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 및 관리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 등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적절한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상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박물관 등으로의 이전 등 소유자·관리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

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방법, 자료제출 요구, 사전 동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